

공 보

제630호 2018. 1. 31.(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438호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439호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9

거창군 조례 제2440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거창군 조례 제2441호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20

거창군 조례 제2442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바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4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27

거창군 고시 제2018-1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6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163호 보상계획열람공고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38

거창군 공고 제2018-166호 공시송달공고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3

거창군 공고 제2018-17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7호선 외2)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46

거창군 공고 제2018-181호 전기사업 양서 인가 공고(진명미래발전 주. 주. 송광에너지) 49

거창군 공고 제2018-182호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송림1호등 4개소) 51

거창군 공고 제2018-184호 거창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 실계획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54

거창군 공고 제2018-185호 201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림분야) 근로자 모집 3차공고 56

거창군 공고 제2018-186호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조경분야) 근로자 모집 3차공고 60

거창군 공고 제2018-189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완료 공고 63

거창군 공고 제2018-19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164,3-165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64

거창군 공고 제2018-201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6

거창군 공고 제2018-202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86

거창군 공고 제2018-203호 「거창군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52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8년 1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438호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이하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은 거창읍 송정1길 24-15에 둔다.

제4조(주요 시설) ①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2.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2. 강당, 노인건강증진실
3. 주방, 급식실
4. 프로그램실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합문화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2. 노인복지회관: 군에 주소를 둔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노동 집회, 상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강당	1회/4시간	50,000원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0원 가산 (음향, 조명 등의 시설 이용을 포함한다)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장애인복합문화관,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운영 예산
- 관련 조문: 제3조(설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총 비용	1,000	2,300	3,344	175	60	6,879	
세출	특교	0	0	600	0	0	600
	도비	1,000	0	0	0	0	1,000
	군비	0	2,300	2,744	175	60	5,279
	소계(a)	1,000	2,300	3,344	175	60	6,879

3. 관련 의견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시설 건립비: 6,644백만원
- 집기 구입비: 175백만원
- 시설 운영비: 60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18~8
----------	--------

제출연월일	2018. 1. 0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근거 규정함(안 제3조)
- 나. 주요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사용허가와 운영·관리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이용의 제한, 이용료, 이용료 면제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노인복지법」 제37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60백만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2. 01.~12.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8년 1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439호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박희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8~2
----------	--------

발의일자	2018. 1. 15.
발 의 자	박희순, 강철우, 이성복, 변상원 김향란, 최광열, 이흥희, 권재경 표주숙, 김종두 의원 (10인)

1. 제안이유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아동학대 예방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제12조, 제17조 및 제4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4,000천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8.~1.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현황(2개소): 경상남도, 사천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8년 1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440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제6조제5호·제6호 중 “한방약초”를 “약초”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향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를 “향노화산업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약초,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약초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제13조(약초센터의 기능) 약초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
2.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3. 향노화 제품 개발

제14조(약초센터의 위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부 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생 략) 5. <u>한방약초</u>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 6.~7. (생 략) ③ (생 략)</p> <p>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생 략) 5. <u>한방약초</u>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u>한방약초</u>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7. (생 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u>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u>항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u> ⑥ (생 략)</p> <p>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u>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u>」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4. (현행과 같음) 5. <u>약초</u>----- ----- 6.~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 ----- ----- ----- ----- 1.~4. (현행과 같음) 5. <u>약초</u>----- ----- 6. <u>약초</u>-----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후단 삭제>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u>항노화산업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u> ⑥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2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약초, 항노화 제품</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3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 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 약초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u></p> <p><u>제13조(약초센터의 기능)</u> 약초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u> <u>2.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u> <u>3. 향노화 제품 개발</u> <p><u>제14조(약초센터의 위탁)</u>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u>제15조(시행규칙)</u> ----- -----</p>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위탁운영
- 활성화 사업 예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약초전처리, 마케팅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 비용(a - b)	180	100	100	50	50	480	
세출	도비	-	-	-	-	-	
	군비	180	100	100	50	50	480
	소계(a)	180	100	100	50	50	480

3. 관련 의견

-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본 장비구입비, 위탁운영비 등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합 계	180	100	100	50	50	480
시설장비 구입비	80	0	0	0	0	80
위탁운영비	100	100	100	50	50	400

2. 사업효과

- 이 시설 운영으로 초기 자립을 위한 위탁 및 장비구입비 등이 소요될 예정이나, 관내 대부분의 약초를 수집, 집하, 전처리, 유통할 계획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농한기와 특정시기 등을 이용하여, 약초 전처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학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9
----------	--------

제출연월일	2018. 1. 0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약초 및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거함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17. 12월말 완료예정

2.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8조1항 후단)

- 삭제: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나. 수당규정 삭제함(안 제12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다. 거창약초유통센터 규정 신설함(안 제12조~제14조)

- 설치 및 위치: 약초 및 향노화 제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설치
- 기능: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향노화 제품 개발
- 위탁: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18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예산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2. 01.~12. 21.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8년 1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441호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이하 “고위험군 환자”라 한다)의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①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통장
4. 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표창) ① 군수는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강철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8~3
----------	--------

발의일자	2018. 1. 15.
발 의 자	강철우, 박희순, 이성복 표주숙, 변상원, 김종두 의원(6인)

1. 제안이유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마. 홍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20,250천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보건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8.~1.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현황: 없음
 - (7) 전국 제정현황(31개소):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영광군 등 31개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8년 1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442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703,440원”을 “1,763,060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p> <p>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한다.</p> <p>2. 보조 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p> <p>② 월정수당은 월 <u>1,703,440원</u>으로 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 ----- -----</p> <p>1. ----- -----</p> <p>2. -----</p> <p>② -----<u>1,763,060원</u>-----</p>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7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의원	실비 (1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 고

-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 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바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
----------	--------

제출일자	2018. 1. 15.
제 출 자	김종두, 표주숙, 박희순, 변상원 이흥희, 강철우, 최광열, 형남현 이성복, 권재경, 김향란 의원(11인)

1. 제안이유

- 2018년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인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7년도 월정수당에서 3.5퍼센트를 인상하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거창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6조제2항)

- 1,703,440원 ⇒ 1,763,060원

나.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별표 1)

- 운임과 숙박비: 정액 ⇒ 실비

구분	현 행					개 정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46,000	실비 (1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 조치: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다. 집행부의견조회: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8.~1.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거창군수

1. 명 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2. 취지와 목적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마련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명: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나. 구성기관: 2017년 12월 현재, 89개 지방자치단체
 - 다. 구성형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임원 구성
 - 연 1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 의장도시에 사무국 설치
 4. 고시방법: 군보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
- 붙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1부. 끝.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제적·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 도시들을 대표한다.

② 영문표기는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약칭 KHCP)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도시”라 한다)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2.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3.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4.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건강도시 홍보사업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구성 및 자격) 협의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협의회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
2. 준회원: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민간부문/기업 등

제5조(가입절차) ①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 및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사무국은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정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

를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정회원 신청 도시는 제2항의 통지를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 회원으로서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
2. 협의회 운영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3.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협의회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준회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3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협력의 의무

제8조(포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건강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상실) ① 협의회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및 사기업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협의회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회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임원은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④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1조(의장도시 선출) 의장도시는 정기총회 개최 6개월 전 희망도시를 공모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부의장도시 및 감사도시 선출) ① 부의장도시는 의장도시가 지명한다.

② 감사도시는 2개 도시로 두며, 정기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2개 도시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업무 및 회계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의 보고
3. 의장에게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 제시
4. 부정·부당한 행위의 시정 요구

제 4 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제4조에서 정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 개최지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개최 도시는 총회를 주관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국내·외 여건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 사항을 제시하여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의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계획 또는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위임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에는 11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 이는 의장도시에서 지명한다.

② 의장도시와 부의장都市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정보의 교류와 축적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실무협의회) 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검토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
3. 회원 상호 간 정책 공유 및 협의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검토 등

제 6 장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2조(기타 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의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고, 보수 총액은 행정자치부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재 정

제24조(회계연도) 협의회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원) 협의회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비 등) ① 회비 등은 협의회 은행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비 등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 그 납부 기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7조(세입) 협의회회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정회원 연회비는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 200만원으로 하며,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수입금은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 등으로 한다.

제28조(세출) ① 다음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지출한다.

1. 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비용

2. 그 밖에 협의회회 운영(교육, 훈련,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와 같은 본래 사업과 협의회회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운영하거나 실행하는데 사용)에 필요한 경비

② 의장도시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도시는 회계연도마다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최초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③ 감사도시는 의장도시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해 최초 운영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 정회원(89개 도시)

【2017. 12월 기준】

시·도명	자치단체명	비고
서울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구로구, 종로구, 강동구, 중랑구, 용산구, 관악구, 동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강북구, 서초구	
부산 (4)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장군	
대구 (1)	수성구	
인천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구	
광주 (3)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 (1)	유성구	
울산 (1)	울산광역시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11)	화성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 시흥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성남시	
강원 (3)	원주시, 양구군, 속초시	
충북 (4)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충주시	
충남 (7)	금산군, 서산시, 부여군,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논산시	
전북 (5)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군산시, 남원시	
전남 (4)	장흥군, 완도군, 순천시, 광양시	
경북 (9)	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경산시, 포항시, 상주시, 울진군, 경주시, 군위군	
경남 (7)	남해군,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 하동군, 통영시, 거창군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 **준회원(10개 기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경남대학교 건강항노화센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연구팀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31.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7길 37 등 9건(부여 8, 변경 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87-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33-38	2009-12-28	2017-01-24	고학의 새로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68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신기은행길 70-63	2009-04-01	2017-01-24	신기마을의 보호수인 은행나무를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7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43	2009-04-01	2017-01-24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63-1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467-30	2009-04-01	2017-01-24	의상봉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0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치내길 50-42	2009-04-01	2017-01-24	갈계의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에 계획된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190.0m, B=8.0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49-3번지 외 1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6)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3,275	1,618					
1	거창읍 대동리	757-1	도	628	66		거창군			
2	“	765-4	도	154	19		거창군			
4	“	964-64	도	62	39		국(건설부)			
5	“	749-3	대	129	129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종중			
6	“	756	대	139	53		거창군			
7	“	749-12	답	214	6		거창군			
8	“	751-2	대	122	6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조*권 외 1인			
9	“	751-8	전	284	128		거창군			
10	“	751-11	전	20	20		거창군			
11	“	751-5	대	213	107		거창군			
12	“	751-10	전	140	140		거창군			
13	“	751-22	전	15	1		거창군			
14	“	751-23	전	2	1		거창군			
16	“	749-16	답	3	63		거창군			
17	“	751-20	답	63	8		거창군			
18	“	749-15	도	171	10		거창군			
19	“	749-6	도	242	177		거창군			
20	“	62-6	답	177	497		거창군			
21	“	57	전	497	91		거창군			

○ 보상조서 (지장물)

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소	성명	
7	거창읍 대동리	751-2	창고	블록판넬(4*2.4)	9.6	m ²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김*순	
8	거창읍 대동리	“	바닥	con'c (3.8*2.1)	7.98	m ²	“	“	
9	거창읍 대동리	“	창고	조립식(2.2*2.5)	5.5	m ²	“	“	
10	거창읍 대동리	“	가옥	벽돌판넬(10.5*5.6)-(5.6*1.9)	48.16	m ²	“	“	
11	거창읍 대동리	“	심야전기	11Kw	1.0	식	“	“	
12	거창읍 대동리	“	물건이전비	-	1.0	식	“	“	
13	거창읍 대동리	“	수도	-	1.0	식	“	“	
14	거창읍 대동리	“	치자나무	10년	1.0	주	“	“	
15	거창읍 대동리	“	매실나무	15년	1.0	주	“	“	
16	거창읍 대동리	“	제피나무	10년	1.0	주	“	“	
17	거창읍 대동리	“	가죽나무	5년	1.0	주	“	“	
18	거창읍 대동리	“	오가피	10년	2	군	“	“	
19	거창읍 대동리	“	연산홍	10년	1	주	“	“	
20	거창읍 대동리	“	기타수목	10년	2	주	“	“	
21	거창읍 대동리	“	골담초	7년	1	주	“	“	
22	거창읍 대동리	“	기타수목	5년	2	주	“	“	
23	거창읍 대동리	“	화단		12	m ²	“	“	
24	거창읍 대동리	751-2	가옥(공가)	스레이트(6.5*5)	32.5	m ²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조*권	
25	거창읍 대동리		창고(화장실)	스레이트	3.0	m ²	“	“	
26	거창읍 대동리		수도	-	1.0	식	“	“	
27	거창읍 대동리		가추	스레이트	4.0	m ²	“	“	
28	거창읍 대동리		담장	-	12.0	m ²	“	“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 style="text-align: center;">『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18. . . .</p> <p style="margin-left: 100px;">의견 제출인 주 소 :</p> <p style="margin-left: 150px;">성 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100px;">전화번호 :</p> <p style="margin-top: 20px;">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중인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 사 업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일원
3. 사업시행자 : 거창군청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 고 장 소 : 거창군청·관내 읍면사무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협의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6)
7. 기 타 사 항 :
 -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협의보상에 관한 방법, 절차, 시기, 구비서류 등 보상협의를 대하여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시송달내역: 붙임

붙임

공 시 송 달 내 역

연번	소재지 (거창군)	편입번지 (분할전)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상)	성명	
1	거창읍 대동리	749-3	대지	129	거창군 거창읍 동동 769	사교제종중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 제 목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 .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7호선외2)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7호선외2)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26.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97호선)	가조	마상	소로	2	197	146.7	8.0	1,220	가조 수월리446-9 ~ 마상리 173-1	경고115호 (‘95.05.24)	2018.02 ~2019.06. 30
	도시계획도로 (소로2-195호선)	가조	마상	소로	2	195	129.7	8.0	1,038	가조 마상리 6-4 ~ 마상리 860-1	경고103호 (‘95.05.12)	2018.02 ~2019.06. 30
	도시계획도로 (소로2-196호선)	가조	마상	소로	2	196	105.6	8.0	878	가조 마상리 171-1 ~ 마상리 9	경고103호 (‘79.05.12)	2018.02 ~2019.06. 30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197호선 외 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7,889	3,136					
1	마상리	173	답	880	149	울산 남구 신정동	이*기			
2	마상리	7-5	답	159	159	서울특별시	정*영			
3	마상리	7-7	답	6	6	서울특별시	정*영			
4	마상리	6-6	답	231	231	서울특별시	정*영			
5	마상리	861-28	도	4,039	29		국(국토교통부)			
6	마상리	5-2	답	217	217	경남 거창군	신*자 외 1인			
7	수월리	450-2	전	186	186	경남 거창군	신*자			
8	수월리	451-3	도	171	171		거창군			
9	수월리	446-9	도	1,529	3		거창군			
10	마상리	171-1	전	356	13		거창군			
11	마상리	171	전	860	291	경남 거창군	손*선 외 1인			
12	마상리	8-3	답	267	267		거창군			
13	마상리	7-3	답	285	285		거창군			
14	마상리	6-4	답	374	374		거창군			
15	마상리	9	답	2,311	314	서울특별시	김*이 외 3인			
16	마상리	8-2	답	12	12		거창군			
17	마상리	15-1	답	82	82		거창군			
18	마상리	16-2	답	98	98		거창군			
19	마상리	860-13	천	277	197		국(국토교통부)			
20	마상리	860-1	천	5,272	49		국(국토교통부)			
21	마상리	860-2	천	277	3		국(국토교통부)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2), FAX(055-940-3579), E-mail : hds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29.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1. 29. ~ 2018. 02. 14.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주)명우전설 명우햇빛발전소(당초) ⇒ 진명미래발전(주) 거창미래발전에너지(변경)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 제2017 -142호 /경남 제2017 -318호)	발전소명	(주)명우전설 명우햇빛발전소	진명미래발전(주) 거창미래발전에너지
	대 표 자	신명순	조희정
	소 재 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6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 2길 87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12-16 (토지위)	
	설비용량	496.64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0. 23.	
	양수(여정)일	2018. 01. 29.	

나. 광명태양광발전소(당초) ⇒ (주)송광에너지 거창에너지발전소(변경)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 제2017 -143호 /경남 제2017 -319호)	발전소명	광명 태양광발전소	(주)송광에너지 거창에너지발전소
	대표자	조광섭	신호기
	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12번길 19(팔용동)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 2길 87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12-16 (토지위)	
	설비용량	496.64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0. 23.	
	양수(예정)일	2018. 01. 29.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29.

거창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1. 29. ~ 2018. 02. 14.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종경1호 태양광발전소(당초) ⇒ 송림발전(주) 종경1호(변경)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 제2017 -156호 /경남 제2017 -514호)	발전소명	종경1호 태양광발전소	송림발전(주) 종경1호
	대표자	이 정 영	
	소재지	경남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37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7길 23, 1층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학리 산7 (토지위)	
	설비용량	495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2. 27.	
	양수(예정)일	2018. 01. 29.	

나. 송림1호 태양광발전소(당초) ⇒ 송림발전(주) 송림1호(변경)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 제2017 -157호 /경남 제2017 -515호)	발전소명	송림1호 태양광발전소	송림발전(주) 송림1호
	대 표 자	이 정 영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37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7길 23, 1층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학리 산7 (토지위)	
	설비용량	495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2. 27.	
	양수(예정)일	2018. 01. 29.	

다. 진솔라파워2호 태양광발전소(당초) ⇒ 주식회사 진솔라에너지 진솔라파워2호(변경)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 제2017 -158호 /경남 제2017 -516호)	발전소명	진솔라파워2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진솔라에너지 진솔라파워2호
	대 표 자	김 현 실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254, 105-106호 (국우동 칠곡현대0파트)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615, 1616번지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615, 1616번지 (토지위)	
	설비용량	990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2. 27.	
	양수(예정)일	2018. 01. 29.	

라. 송림2호 태양광발전소(당초) ⇒ 송림발전(주) 송림1호(변경)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 제2017 -159호 /경남 제2017 -517호)	발전소명	송림2호 태양광발전소	송림발전(주) 송림2호
	대표자	이정영	
	소재지	경남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37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7길 23, 1층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616, 1617번지 (토지위)	
	설비용량	990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2. 27.	
	양수(예정)일	2018. 01. 29.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거창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57호(2015.5.14)로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방재시설:정장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31.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

나) 명 칭 : 정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 사업규모(변경없음)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시 행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연장 (m)	폭 (m)	면 적 (㎡)	시행 구간		
군 계 획 시 설	정장천	지방 하천	거창읍 장팔리 1462-1	거창읍 정장리 1452-33	4,300	10~40	1,640	15~20	41,538	거창읍 정장리 1013번지 일원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 (2008.9.25)	사업기간 변경

4. 사업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나) 성명 : 거창군수(안전총괄과장)

5. 사업기간

○ 당초 : 2015. 5. 14 ~ 2017. 12. 31

○ 변경 : 2015. 5. 14 ~ 2018. 6. 2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201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림분야) 근로자 모집 3차공고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산림자원조사단, 명상숲 코디네이터)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거창군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연번	사업명	채용인원	주요업무내용
계		15	
1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3 (남6,여7)	숲가꾸기사업 및 산물수집, 덩굴제거 등
2	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1 (남,여)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및 DB자료 구축 등
3	명상숲 코디네이터	1 (남,여)	도시숲명상숲 내 수목관리 및 환경정비

2. 근 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 의함

3. 근로조건

- 근로기간: 2018. 3월 ~ 12월(예산범위 내)
- 보수수준: 1일 60,240원(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 출·퇴근 및 작업 장소 이동에 따른 수당 미지급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하절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기타사항: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
- 사역 후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의무 이수(1~2주 합숙)

- 근무부서: 산림과 공원녹지담당(근로지역: 거창군 전역)

4. 신청자격(공통)

- 거창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산림(조경, 식물)관련 기술자, 경력자 가점 부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 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산림관련 고교·대학 졸업자
- 임업기계 사용·운반 등 원활한 근로를 위한 차량소지자 가점부여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장년층 우선선발
- 기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및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신청자격제한에 대하여 적합한 자[붙임참고]

5. 우선선발(사업별 상이)

- 공통사항: 참여비율 조정(취약계층45% 장년층 70% 청년층20%)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장·행정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산림사업 관련 DB구축에 필요한 시스템(PC) 활용이 가능한 자
- 명상숲코디네이터
 -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명상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장·행정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명상숲 관련 DB구축에 필요한 시스템(PC) 활용이 가능한 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18. 02. 01.(목) ~ 02. 05.(월) / 3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거창군청 산림과(공원녹지담당)
 -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제출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동의서 미제출시, 자격, 소득, 재산 등의 선발기준 확인 서류는 별도 제출(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약을 위해 대상자 예비 선정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을시 선발 배제

다.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라.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마. 구직등록증

7. 채용방법 및 일정

○ 채용방법: 공개채용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결격사유 조회, 일모아시스템 조회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2. 12.(월)예정, 개별통보

나. 제2차 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2018. 02. 19.(월) 예정,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02. 21.(수) 예정,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이상 없을 시 사역

8. 기타사항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반환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1차,2차 공고기간 내 신청·접수하여 불합격 하신 분은 재신청 불가하며, 향후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추가 선발계획이 있을 시, 기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공원녹지담당(☎055-940-3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조경분야) 근로자 모집 3차공고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조경관리단, 산림경관관리단)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거창군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연번	사업명	채용인원	주요업무내용
계		23	
1	조경관리단	15 (남 9, 여 6)	가로수 및 녹지공간 관리(풀베기, 전정 등) 생활권 내 재해위험목 제거 등
2	산림경관관리단	8 (남 5, 여 3)	가로수 뒤 도로법면 및 연접산림 잡목·덩굴류 제거 등

2. 근무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3. 근로조건

- 근로기간: 2018. 3월 ~ 11월(예산범위 내)
- 보수수준: 1일 60,240원(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 ※ 실제 근무일수에 한하여 부대경비 3,000원 지급
 - ※ 출·퇴근 및 작업 장소 이동에 따른 수당 미지급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 하절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기타사항: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
- 근무부서: 산림과 공원녹지담당(근로지역: 거창군 전역)

4. 신청자격

- 거창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산림(조경)관련 기술자, 경력자 가점 부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 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임업기계 사용·운반 등 원활한 근로를 위한 차량소지자 가점부여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장년층 우선선발
-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신청자격제한에 대하여 적합한 자[붙임참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18. 02. 01.(목) ~ 02. 05.(월) / 3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거창군청 산림과(공원녹지담당)
 -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제출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동의서 미제출시, 자격, 소득, 재산 등의 선발기준 확인 서류는 별도 제출(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 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약을 위해 대상자 예비 선정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을시 선발 배제
 - 다.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 라.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마. 구직등록증

6. 채용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방법: 공고 후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결격사유 조회, 일모아시스템 조회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2. 12.(월)예정, 개별통보
 - 나. 제2차 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2018. 02. 19(월) 예정, 개별통보
 -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02. 21.(수) 예정, 개별통보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이상 없을 시 사역

7. 기타사항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반환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1차,2차 공고기간 내 신청·접수하여 불합격 하신 분은 재신청 불가하며, 향후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추가 선발계획이 있을 시, 기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공원녹지담당(☎055-940-3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16호(2015.02.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8. 2. 1.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명칭	위 치	사업규모(m ²)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교통 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서흥여객 자동차터미널 이전 신축사업 (캐노피 증축사업)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10 일원	13,872	3,941	130.91	133.86	2017.12.21 ~ 2018.03.31	경고 제1985-43호 (1985.03.16)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받들길 33
- 성 명 : 서흥여객자동차(주) (대표 박종덕)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3-165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97호(2015.09.3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164,3-165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8. 01. 31.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 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군계획 시설: 교통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일원	소로	3	164	217	6.0	1,681	거고25호 (’02.6.10)	2015.09.30 ~ 2017.12.31
	도시계획도로 (소로3-165호선)	거창읍 동변리 1160-4번지 일원	소로	3	165	165	6.0	1,266		2015.09.30 ~ 2017.12.31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중)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 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준 공 내 용								
사업명칭	월천지구(소로3-164,3-165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목적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긴급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514-3번지 일원	사업량	L=382m, B=6.0m					
시행방법	신청인 직영	시행기간	2015.09.30 ~ 2017.12.31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대	구	답	전	도	창	합 계
	면 적	1,207	30	73	285	1,319	33	2,947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도로						계
	면 적	2,947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계
	개 요	2,947						
소요 사업비	1,200백만원			공사완료일		2017. 12. 28		

2017년 01월 31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1.1.시행)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설치, 업무방법, 권한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안 제3조~제6조)
- 다.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및 처리(안 제7조~제10조)
- 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전 심의 대상 등(안 제11조)
 - 지방세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의 처리
- 마.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안 제12조)
- 바. 세무조사의 연장연기신청 및 결정(안 제15조~제16조)
 - 세무조사 연기신청의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사. 권리보호 요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간(안 제17조~제21조)
- 아. 납세자권리현장 제정 및 준수(안 제22조~제23조)

카.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안 제24조 ~ 제25조)

4. 입법예고 기간: 2018. 1. 31. ~ 2018. 2. 20.(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거창군청 재무과 ☎ 055-940-3231, fax 940-321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 940-32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2018 ~
----------	--------

제출일자	2018. . .
제 출 자	재 무 과 장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1.1.시행)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설치, 업무방법, 권한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안 제3조~제6조)
-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및 처리(안 제7조~제10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대상 등(안 제11조)
 - 지방세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의 처리
-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안 제12조)
- 세무조사의 연장연기신청 및 결정(안 제15조~제16조)
 - 세무조사 연기신청의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권리보호 요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간(안 제17조~제21조)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안 제22조~제23조)
-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안 제24조~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일이상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 의뢰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외에 군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로 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5.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 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7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에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

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화·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심의 등) ①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고충민원 취하) 납세자는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5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납세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2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 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

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정(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正本(正本)과 부분(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분은 처분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

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8- 202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1.1.시행)에 따라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고충민원의 접수, 처리기간, 의견조회, 결과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8조)
- 나.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1조)
- 다.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통보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7조)
- 라. 징수유예 등, 기한의 연장, 가산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20조)
- 마. 각종대장 및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

4. 입법예고 기간: 2018. 1. 31. ~ 2018. 2. 20.(20일간)

5. 의견제출

- 가.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재무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거창군청 재무과 **☎ 055-940-3231, fax 940-321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 940-32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시행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의안 번호	2018 ~
----------	--------

제출일자	2018. 1. .
제 출 자	재 무 과 장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 1. 1. 시행)에 따라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충민원의 접수, 처리기간, 의견조회, 결과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8조)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1조)
-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통보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7조)
- 징수유예 등, 기한의 연장, 가산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20조)
- 각종대장 및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일이상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분석 의뢰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 처리기간)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부서 등의 직원, 납세자, 관련인 등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조례 제11조에 따른 거창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및 처리사유 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및 의견청취) ① 세무부서의 장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지체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권리보호요청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및 처리사유 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

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착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4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

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 그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18조(징수유예등)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 연장 신청(이하 “기한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 연장 신청(이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신청(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37호서식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별지 제38호서식

③ 납세자보호관이 기한연장 승인(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승인(납부기한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 신청: 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조(가산세 감면 등) ①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처리 결과(승인여부)를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고충민원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 별지 제5호서식(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6호서식(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 별지 제7호서식(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 별지 제8호서식(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 별지 제9호서식(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 별지 제10호서식(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 별지 제11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 별지 제12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 별지 제13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지)
- 별지 제14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 별지 제15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 별지 제15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16호서식(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 별지 제18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 별지 제19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통지)
- 별지 제20호서식(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 별지 제23호서식(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 별지 제24호서식(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 별지 제25호서식(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26호서식(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별지 제28호서식(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 별지 제29호서식(세무조사 착수연기 요청)
- 별지 제30호서식(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 별지 제31호서식(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 통보)
- 별지 제32호서식(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별지 제33호서식(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결정 통보)
- 별지 제34호서식(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별지 제35호서식(지방세 기한연장 접수 통보)
- 별지 제36호서식(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 별지 제37호서식(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별지 제38호서식(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별지 제39호서식(지방세(납부) 기한연장 여부 통지)
- 별지 제40호서식(지방세(납부)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별지 제41호서식(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접수 통보)
- 별지 제42호서식(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별지 제43호서식(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 별지 제44호서식(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조치결과 통보)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원내용	처리여부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처리에정기한
기한연장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약)				
00과 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납세자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8조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발 신 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연장신청 사유	※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 연장신청 사유를 기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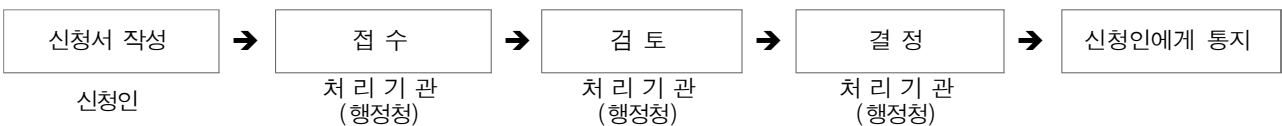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 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통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	--------	--------	--------	--------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 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청사유	처리여부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사유	
	4 기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착수연기 요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세무조사 착수연기를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사반			조사유형	
세무조사 착수연기 요청사유				
세무조사 착수연기 기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사반			조사유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체납처분유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신청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신청서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체납처분유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납부)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납부)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접수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 / 공개 구분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등의 여부 의견				
감면 등의(감면불가) 사유				
감면 등의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 등을 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등의 여부(승인 여부)				
감면 등의(감면불가) 사유				
감면 등의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조치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전달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정(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正本(正本)과 부분(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분은 처분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

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회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회 위원장이 지방세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2. 일부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의 개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이 10일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으로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전으로 정비함
(안 제17조)

4.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8. 1. 31. ~ 2018. 2. 20.(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거창군청 재무과
- 전 화: 055-940-3231
- 팩 스: 055-940-321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940-32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2018~
----------	-------

제출일자	2018. 1. .
제 출 자	재 무 과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의 개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으로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전으로 정비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31. ~ 2018. 2. 20.(20일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중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전달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

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正本(正本)과 부분(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분은 처분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